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10. 16 선고 2023가합10235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큐브

담당변호사 배수진, 신동인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굿플랜

담당변호사 채상률

변론 종결2024. 8. 21.

판결 선고2024. 10. 16.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동력수상레저기구에 관하여 2022. 10. 1.에 체결한 대물변제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력수상레저기구의 피고 소유 1/2 지분에 관하여 지분 소유권이전 변경등록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요트매매계약 체결

1) 원고는 보트, 요트 렌탈업을 영위하는 회사다.

2) 원고는 2022. 5. 10.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로부터 요트 Fairline 481) (이하 '이 사건 제1요트'라고 한다) 1대를 5억 8,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2. 6. 3. D의 실제 운영자이자 'E'라는 상호로 요트 관련 무역업을 영위하는 F으로부터 요트 Lagoon Power 44(이하 '이 사건 제2요트'라고 한다) 1대를 일본국 통화 54,000,000엔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D와 F은 'G'라는 상호로 요트 등의 판매업을 영위하는 C에게 이 사건 제1, 2요트의 구매대행을 요청하였고 C은 이를 승낙하였다.

나. 구매대금 반환약정

1) 원고가 D와 F에게 이 사건 제1, 2요트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와 F이 이 사건 제1, 2요트를 인도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F, C에게 이 사건 제1, 2요트 인도채무의 이행을 독촉하였다.

2) C은 2022. 7. 5.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요트의 구매대금 5억 8,000만 원을 D을 통해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제1요트를 2022. 7. 15.까지 인도하되, 만약 이 사건 제1요트가 2022. 7. 31.까지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매자금 명목으로 수령한 5억 8,000만 원을 2022. 8. 1.까지 원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반환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제1반환약정'이라고 한다), 이 사건 제2요트에 관하여 이 사건 제2요트를 2022. 7. 15.까지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하고, 이 사건 제2요트가 2022. 7. 15.까지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매자금 명목으로 수령한 일본국 통화 54,000,000엔을 2022. 7. 16.까지 원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반환약정'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2반환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반환약정'이라고 한다).

3) C은 이 사건 각 반환약정에서 지정한 날짜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요트를 인도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C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반환약정에 따른 약정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가합103040). 이에 C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부산고등법원 2023나56029)을 선고받아 2024. 7. 27.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C과 피고 사이의 요트매매계약

1) 피고는 H와 공동으로 요트 서비스업을 운영하기로 하고 2022. 4. 10. D과 사이에 요트 Lagoon 450(이하 '이 사건 제3요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와 H는 D에 미국 통화 420,000달러를 지급하였다.

2) 피고와 H는 D의 실제 운영자인 F이 구두로 약속한 인도일자까지 이 사건 제3요트를 인도하지 못하자 2022. 6. 25. F, C과 사이에 F으로부터 이 사건 제3요트에 대한 위약금 명목으로 7억 5,4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C이 위 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연대보증각서를 받았다. 연대보증각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연대보증각서는 2022. 6. 25.자로 피고, H, F, C 사이에 체결됩니다.

1. 채무자는 F, C, 채권자와 2022. 6. 23. 총액 7억 5,400만 원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본 각서의 연대보증인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지불각서상의 지급채무를 채무자와 연대하여 부담하기로 하였고, 본 각서 체결일 이후 언제라도 채권자가 청구하는 경우 채무자와 연대하여 위 지불각서금 전액을 지급할 것입니다.

2. 채무자의 지불각서금 채무 부담의 경위: 채무자는 2022. 5. 31. 요트랑 대표 피고, H로부터 요트 구매대금 미국 통화 420,000달러 및 3,500만 원을 받아서 2022. 6. 23.까지 이 사건 제3요트를 인도해주기로 약속하였으나, 약속 불이행하여 6. 23.까지 미도착하였으며 요트구매대금을 F과 C이 회사운영자금으로 유용하여 쓴 정황이 드러나 요트랑 회사에게 심각한 금전적, 정신적 타격을 입힌 바 위약금 30% 포함 7억 5,4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3.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의 지불책임을 확인하고 조항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1) 채권자: 피고, H

(2) 채무자: F

(3) 피담보채무의 범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지불각서금 7억 5,400만 원 지급채무(이자, 지연배상금 등 포함) 일체

(4) 보증한도액: F의 지불각서금 7억 5,400만 원의 130%

6. 본 각서에 의한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채무는 무조건적이며 취소불가능한 것으로서 채무자의 자력 기타 어떠한 사유로도 채권자에게 항변 또는 대항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3) 피고와 H는 C에게 대체선박을 구해줄 수 있는지 물었고, C이 이 사건 제2요트를 구해줄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피고, H는 2022. 7. 초순경 C으로부터 이 사건 제2요트를 4,8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 D, C은 2022. 7. 12.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제2요트의 구매를 의뢰하였고, C이 요트 매매대금을 전액 수령하였으나 매매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로 C은 매매대금을 반환하고, 이 사건 제2요트는 C의 소유물로 변경하되, C이 2022. 7. 18.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요트 매매대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 해지/해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5) 피고와 H는 이 사건 제2요트를 인도받아 2022. 10. 26. 각 1/2 지분 공유로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8, 9, 11, 14,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 법리 가)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킴으로써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권리로서, 특정물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사해행위로 인하여 사해행위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채권자를 해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취소채권자의 채권은 사해행위가 있기 이전에 발생하고 있어야 함은 채권자 취소권의 성질상 당연한

요건이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534 판결 등 참조).

나) 어느 시점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는가를 따짐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3138, 73145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원고는 피고, H와 C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제2요트에 관한 사해행위를 '2022. 10. 1.경 체결한 대물변제계약'으로 특정하였다. 그러나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는 등기·등록일이 아닌 그 원인행위를 기준으로 하는 바, 을 제9, 11, 12, 1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 H와 C이 이 사건 제2요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짜는 아무리 늦어도 2022. 7. 4.경이거나 그 이전으로 보인다.

① 피고, H와 C은 이 사건 제2요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금액 4,800만 원 중 48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잔금 4,320만 원은 2022. 7. 4. 지불한다'고 정하였다. 통상 매매계약 잔금은 계약일 이후에 지급하거나 최소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므로 이 사건 제2요트 매매계약일은 아무리 늦어도 2022. 7. 4.경이거나 그 이전으로 추단된다.

② 피고, H는 2022. 7. 19. 이 사건 제2요트 운송비용 등 합계 4,500만 원을 C, F에게 지급하였고, 2022. 7. 25. 임시선박국적증서를 발급받았으며, 2022. 9. 27.에는 이 사건 제2요트에 관하여 수입신고를 마쳤다.

③ 피고와 H가 C에게 이 사건 제2요트에 관하여 원고측과 계약관계를 정리한 후 이 사건 제2요트를 인도해줄 것을 요구하자, C이 2022. 7. 12.경 원고, D와 사이에 '이 사건 제2요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고 이 사건 제2요트를 C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계약해지해제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의 D, F에 대한 이 사건 제1, 2요트에 관한 특정물채권이 2022. 7. 5. 이 사건 제1, 2반환약정을 통하여 C에 대한 약정금채권으로 변경된 사실은 앞서 보았다. 그런데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킴으로써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권리로서, 특정물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534 판결 등 참조). 즉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금전채권으로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약정금채권이 피고, H와 C 사이의 이 사건 제2요트 매매계약일(2022. 7. 4.경 또는 그 이전) 전에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약정금채권은 피고, H, C 사이의 이 사건 제2요트매매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2).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서근찬

판사최리니

판사정성희

별지

- 1) 최초 매매목적물은 요트 Princess 42였으나, 위 요트가 제3자에게 이미 판매가 이루어져 매매가 불가능해지자 위 요트 대신 요트 Fairline 48로 매매목적물을 변경하였다.
- 2) 참고로 특정물채권이 사해행위 당시에는 아직 금전채권으로 전환되지 아니하였지만 장차 금전채권(손해배상채권 등)으로 전환될 것을 전제로 하여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느냐에 관해 학설상 견해의 대립이 있기는 하지만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전형적 사례가 이중매매의 경우 제1매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2차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판례는 부동산의 이중매매의 경우 제1매수인인 채권자는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와 제2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2차 매매계약을 취소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1965 판결) 이 경우 채권자가 매도인의 이중양도로 인하여 취득한 매도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이중양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할 수 없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고 한다. 그 이유에 대하여는, 이중매매의 제1매수인은 이중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비로소 이행불능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게 될 뿐 이중매매 당시에는 채무자의 변제자력과 관계없는 특정물채권자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 속에 위와 같은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